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
(강명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75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3.

발 의 자 : 강명구 · 서천호 · 김용태  
서명옥 · 이달희 · 김형동  
배준영 · 권영세 · 엄태영  
성일종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고령화 사회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, 경로당은 노인의 여가활동 공간 일 뿐 아니라 취약노인의 보호와 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거점 기능 또한 수행하게 되었음.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구입비 및 냉·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, 그 밖의 경로당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음.

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과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37조의2제2항).



법률 제 호

##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의2의 제목 중 “양곡구입비 등의 보조”를 “지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냉난방 비용”을 “운영에 필요한 비용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7조의2(경로당에 대한 <u>양곡구입비 등의 보조</u>) ① (생략)</p> <p>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<u>냉난방 비용</u>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</p>	<p>제37조의2(경로당에 대한 <u>지원</u>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<u>운</u> <u>영에 필요한 비용</u>----- -----.</p>